

과징금납부통지서(수납기관보관용)

① 발행번호		
②	상호(명칭)	
납부자	성명(대표자)	
③ 위반일자		
④ 위반행위		
⑤ 납부금액		원
⑥ 납부기한		
⑦ 수납기관		
「해운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(지방해양수산청장) [인] 수납인		

과징금영수필통지서(해양수산부보관용)

① 발행번호		
②	상호(명칭)	
납부자	성명(대표자)	
③ 위반일자		
④ 위반행위		
⑤ 납부금액		원
⑥ 납부기한		
⑦ 수납기관		
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해양수산부장관 (지방해양수산청장) 귀하 수납인		

과징금납부영수증(납부자보관용)

① 발행번호		
②	상호(명칭)	
납부자	성명(대표자)	
③ 위반일자		
④ 위반행위		
⑤ 납부금액		원
⑥ 납부기한		
⑦ 수납기관		
위와 같이 영수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해양수산부장관 (지방해양수산청장) 귀하 수납인		

297mm × 210mm(일반용지 60g/m²)